

2026년

도 시 철 도 정 관 선 건 설 사 업
전 락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서
설 계

2026. 10.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철도시설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공간적 범위 : 도시철도 정관선 L=12.8km

- 위 치 : 기장군 월평리 ~ 정관신도시 ~ 동해선 좌천역

나. 내용적 범위(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년)

4 과업수행 참가자격

- 본 과업은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보유한 업체

5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건 변동, 과업범위, 기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처가 과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수렴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일반적인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한다.

2. 과 업 지 시 서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II. 일반수행 지침	3
III. 세부수행 지침	10
IV. 성과품 제출	16
V. 예정공정표(안)	17
VI. 위치도	18

I 과업의 개요

① 과업명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② 과업배경 및 목적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③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도시철도 정관선 (L=12.8km)

- 위 치 : 기장군 월평리 ~ 정관신도시 ~ 동해선 좌천역

나. 주요과업내용

1) 전략영향평가서 작성·협의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검토요청

라) 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설명회 등 포함)·검토·반영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본안) 작성 협의요청

2) 협의 과정에서 관련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결정

☐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Ⅱ 일반수행지침

① 과업수행 기준

-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발주청의 지시, 제반규정에 따라 책임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고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 다.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은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에 이용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통계 및 보고서 등 공식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이 조사하지 않고 기존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지시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력 구성

-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나. 사업 책임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과업추진 일정 및 과업의 변경

-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 1) 용역공정예정표
 -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3)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 4)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세부공정계획서(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등)
 - 관련법에 명시된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출
- 2) 과업의 시기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4)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다. 과업수행 일정은 다음 일정을 고려, 과업수행자가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과업수행계획표에 의한다.

- 1)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 보고
- 2)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 공정결과를 작성하여 1회 이상(착수 후 2개월) 과업추진상황 보고
-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을 작성하여, 사전보고 후 유인하여 관계부처 협의자료로 사용
-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라.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④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수행자의 의무

-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가. 과업수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
 -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과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7 안전

- 가. 과업수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 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나. 책임수행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안책임

-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가.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나. 용역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청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청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마.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청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Ⅲ 세부수행지침

① 평가준비서 작성

가.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4)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 5) 대안의 설정
- 6)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7)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요약문
- 2) 계획의 개요
- 3) 환경보전목표

- 4) 대안
-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6) 지역개황
-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10) 계획의 적정성
- 11) 입지의 타당성
- 12) 종합평가 및 결론
- 13) 부 록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요약문
- 2) 계획의 개요
- 3) 환경보전목표
- 4) 평가대상지역
- 5) 지역개황

- 6)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 7)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8) 공개된 평가항목·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10) 계획의 적정성
- 11) 입지의 타당성
- 12) 종합평가 및 결론
- 13) 부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

1)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환경보전 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대책 및 대안, 결론 순으로 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과 목적, 실시근거, 계획내용 등을 기술한다.

3)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 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개황

-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개황 및 환경 개황을 작성한다
 - 인구, 산업, 경제, 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여건 및 전망
 - 해당계획의 입지 여건과 평가 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 구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개요,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등을 작성한다.
- 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당계획의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요소를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을 제시한다.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을 제시한다.
- 장래 운영시 철도시설 지하화에 따른 진동 영향·저감대책은 문헌자료(기본계획 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검토·제시한다.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을 기재한다.

④ 본 과업 관련 협의 서류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 환경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⑤ 본 과업 관련 선행 용역 참고자료

가.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성과품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청이 보유한 관련 선행용역 성과품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법령·지침 및 현장 여건 등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다.

IV 성과품 제출

①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2조에 의거 다음의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된다.

② 성과품 납품 목록

가. 평가 준비서	-----	15부
나. 초안 보고서	-----	25부
다. 본 평가서	-----	30부
라.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마. 현황조사(환경질·수질 및 생태계조사) 보고서 및 사진첩(칼라사진)	-----	1식
바. 최종성과품(USB, 보고서)	-----	1식
사.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협의)	-----	1식

V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사업개요 파악 및 현장조사													
2. 평가대상지역 및 지역개발 조사													
3. 환경현황조사(동·식물 조사 및 환경질조사)													
4.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 항목·범위 설정													
5. 평가준비서 심의(협의회) 및 심의결과 인터넷 공개													
6. 평가서 초안 작성													
7. 의견수렴													
8. 평가서 본안 작성													
9. 협의 및 보완													

VI 위치도



3. 설 계 내 역 서